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장 결격사유 규정 〉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688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장 결격사유 규정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3. 6.
3. 회 부 일: 2025. 3.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도록 함.

그런데 법률에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소속 회원단체의 회장에 대한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폭행 및 성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각 단체의 회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육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체육인의 인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법률에서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및 각 회원단체의 장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장 결격사유 규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및 회원단체장의 결격사유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34조의2(체육회 회장 등의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장애인체육회의 회장 및 체육회·장애인체육회의 각 회원단체의 장이 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u>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u> 2. 「형법」 제2편제25장 <u>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3. <u>각 단체의 정관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u>
--	---

다. 검토의견

- 현재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및 회원단체(대한체육회 ‘회원단체’¹⁾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단체’²⁾)의 장의 결

- 1)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회원단체) ① 체육단체는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단체가 된다.
 ② 제1항의 회원단체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종목단체”는 회원단체 중 특정 종목의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회원시·도체육회”는 회원단체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관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체육회를 말한다.
 ③ 제1항의 회원단체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로 회원 가입을 확정된 단체를 말한다.
 2. “준회원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가입을 확정된 단체를 말한다.
 3. “인정단체”는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 해당 단체가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 2) 「대한장애인체육회」 제5조(조직가맹) ①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이하 “가맹단체”라 한다)는 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할 수 있으며, 가맹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가맹단체”는 가맹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장애인체육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 의결로써 가맹을 확정된 단체를 말한다.
 2. “준가맹단체”는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준가맹을 승인받아 권리와 의무사항을 제한적으로 적용받는 단체를 말한다.
 3. “인정단체”는 장애인체육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해당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② 종목별 경기단체라 함은 종목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단체를 말한다.
 ③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라 함은 장애유형별 국제기구에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가입한 단체 중 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한 단체를 말한다.
- 제6조(지회) ① 장애인체육회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에 지회(이하 “시·도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회의 요건 및 절차,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해외지부가 필요할 경우 대표성이 있는 재외한인체육단체가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 대표성이 있는 재외한인체육단체의 지정 및 요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9조(회원) 장애인체육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IPC집행위원 및 선수위원
 2. 정가맹단체

격사유는 「대한체육회 정관」 등 체육단체 내부 규정에 규율되어 있음.³⁾

[체육단체장 결격사유 근거 규정]

체육단체	체육단체별 근거규정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 정관」 등 ○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 종목단체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등 - 회원시·도체육회 : 「대한체육회 회원시·도체육회 규정」 등
대한장애인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등 ○ 가맹단체 :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운영규정」 등 ○ 지회(시·도장애인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지회운영규정」 등

○ 그런데 범죄경력자가 체육단체장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육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체육인의 인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개정안은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단체의 내부 규정으로 규율되어 온 사항이 상향 입법됨으로써 체육단체장의 자격에 대한 강제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3. 선수대표(선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4. 지도자대표(지도자협의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5. 심판대표(심판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3) [참고자료1] 체육단체 회장 결격사유 근거 조문

- 첫째, 대상 단체 범위(안 제34조의2 본문)와 관련하여, 현행 정관상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는 ‘회원종목단체’ 및 ‘회원시·도체육회’임에 반해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은 ‘정가맹단체’만 인정되므로, 개정안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 ‘준가맹단체’·‘인정단체’(‘정가맹단체’ 아닌 ‘가맹단체’) 및 ‘지회’(‘시·도장애인체육회’)만 제외하는 것은 체육단체간 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 보임.
- 둘째, 대상자 범위(안 제34조의2 본문)와 관련하여, 체육단체 운영 전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장’뿐만 아니라 ‘임원’에 대한 사항도 본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⁴⁾
- 셋째, 결격사유 항목(안 제34조의2 각호)과 관련하여, 현재 체육단체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사유 중 일부만을 법률에 상향 입법할 경우 결격사유별 법체계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모든 결격사유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 넷째, 기타 결격사유의 정관으로의 위임(안 제34조의2제3호)과 관련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결

4) 문화체육관광부 의견 : 현재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운영규정’, ‘대한체육회 회원시·도체육회 규정’,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지회 규정’에는 결격사유를 회장에 국한하지 않고, 회장을 포함한 임원 전체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체육단체 운영 전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또한 ‘회장’에서 ‘임원’으로 대상 범위 확대 필요

격사유를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⁵⁾

- 다섯째, 현행법 및 개정안에는 결격사유 심사를 위한 관계기관에의 범죄경력조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유사입법례⁶⁾ 등을 고려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와 관련

5) (경찰청) 안 제34조의2제3호는 삭제 필요

- 체육단체 임원 결격사유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원칙적으로 법률로 정하되 필요최소한도로 하위법령에 위임하여야 한다는 점(「대한민국헌법」 제37조, 「행정기본법」 제16조),
- 특히 결격사유가 전과와 관련된 경우 민감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고 범죄경력조회와 근거가 개별 법률에 있는 등 필요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형실효법」 제6조) 등 고려 필요

6) < 범죄경력조회 자료 요청 및 결격사유 해당 시 효력 관련 유사 입법례 >

법률명	조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8조(후보자등록) ④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본인의 범죄경력(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정하는 범죄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범죄경력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범죄경력은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법	제9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각 호 생략)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③ 안전기술원은 임원이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같은 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공공기관
새마을 금고법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상근이사는 제1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각호: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제18호) 등 ② 임원에게 제1항(제12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 퇴임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 금고와 중앙회는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에게 제1항의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력조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하여, 결격사유 해당 시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구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개정안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임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음.⁷⁾

-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상 단체 범위를 ‘경기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로 수정, ② 대상자 범위를 ‘회장’에서 ‘임원’으로 확대, ③ 결격사유 세부 항목 삭제, ④ 경찰청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역자치단체장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권한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임.⁸⁾

법률명	조문
해양환경 관리법	제10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각 호 생략)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공단: 공공기관

7) (수정의견)

개정안	수정의견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회·장애인체육회 회장 및 체육회·장애인체육회의 각 회원단체의 장으로 취임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제34조의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체육회·장애인체육회 회장 및 체육회·장애인체육회의 각 회원단체의 장으로 취임 중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8) (문화체육관광부 수정안)

문 의 처

02)6788-5375

개정안	문체부 수정안
제34조의2(체육회 회장 등의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장애인체육회의 회장 및 체육회·장애인체육회의 각 회원단체의 장이 될 수 없다. 1. (생 략) <신 설> 2. (생 략) <신 설> 3. (생 략) <신 설> <신 설>	제34조의2(체육단체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 임원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관계 법령이나 해당 체육단체 정관에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를 말한다)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지체없이 그 범죄경력을 회보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삭 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주1) 지방체육회: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

2) 시·도장애인체육회장은 시·도지사, 시·군·구장애인체육회장은 시·군·구청장이 당연직

「장애인체육회 시·도지회운영규정」

제18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② 시·도장애인체육회장에는 시·도지사를 부회장 중 1인은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32조(시·군·구장애인체육회의 조직 및 구성) ② 시·군·구장애인체육회장에는 해당 시·군·구의 시장, 군수, 구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회장중 1인은 시·군·구 교육장이 되고 기타는 회장이 지명한다.

[참고자료1] 체육단체 회장 결격사유 근거 조문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 3. 13., 2020. 10. 13., 2022. 11. 1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4의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7.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단체(회원종목단체, 회원시·도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회원단체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7조(후보자 등록)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장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대한체육회 회원시·도체육회 규정」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4의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6.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단체(회원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회원단체의 임원으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체육회의 명예회장, 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 7. 삭제

8.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9.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

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9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의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사람

11.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12.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

13.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단체(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회원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회원종목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회원종목단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종목단체는 해당자로부터 회원종목단체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회원종목단체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익이 제기되면 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회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 6. 19.>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19. 6. 19., 2024. 3. 12.>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19. 6. 19., 2024. 3. 12.>

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4. 3. 12.>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의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4. 3. 12.>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

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개정 2019. 6. 19.>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③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⑤ 임원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0조(후보자 등록)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라.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가맹단체 회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19.6.19.>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19.6.19., '24.2.21.>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19.6.19., 개정 '24.2.21.>

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24.2.2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3의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24.2.21.>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개정 '19.6.19.>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5.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지방의회 의원 <신설 '16.6.8., 개정 '25.7.15.>

6.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신설 '20.9.3.><개정 '24.2.21.>

7. 사회적 물의,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신설'24.2.21.>

③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그 가맹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3.5.30.>

④ 가맹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가맹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가맹단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단체는 해당자로부터 가맹단체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가맹단체 간 거

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장애인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16.6.8.>

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지부,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지부,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16.6.8., '18.12.12., '20.9.3.>

⑦ 임원은 제1항부터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신설'24.2.21.>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지회운영규정」

제20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장애인 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19. 6. 19.>

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19. 6. 19., '24. 5. 29.>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19. 6. 19.> <개정 '24. 5. 29.>

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4. 5. 29.>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3의3.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4. 5. 29.>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개정 '19. 6. 19.>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그 시·도장애인체육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임원이 제①, ②, ③항에 해당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신설 '14. 2. 5.> <개정 '19. 6. 19.>

[참고자료2] 체육단체 현황

□ 대한체육회 - 회원 시도체육회(17개)

No	단 체 명
1	서울특별시체육회
2	부산광역시체육회
3	대구광역시체육회
4	인천광역시체육회
5	광주광역시체육회
6	대전광역시체육회
7	울산광역시체육회
8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9	경기도체육회

No	단 체 명
10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11	충청북도체육회
12	충청남도체육회
13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14	전라남도체육회
15	경상북도체육회
16	경상남도체육회
17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대한체육회 - 회원종목단체(82개)

구분	No	단 체 명
정 회 원 (64)	1	대한가라테연맹
	2	대한검도회
	3	대한게이트볼협회
	4	대한골프협회
	5	대한국학기공협회
	6	대한궁도협회
	7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8	대한근대5종연맹
	9	대한민국농구협회
	10	대한당구연맹
	11	대한민국댄스스포츠연맹
	12	대한력비협회
	13	대한레슬링협회
	14	대한롤러스포츠연맹
	15	대한루지경기연맹
	16	대한바둑협회
	17	대한바이애슬론연맹
	18	대한민국배구협회
	19	대한배드민턴협회
	20	대한보디빌딩협회
	21	대한복싱협회
	22	대한볼링협회
	23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구분	No	단 체 명
정 회 원 (64)	43	대한우슈협회
	44	대한유도회
	45	대한육상연맹
	46	대한조정협회
	47	대한민국족구협회
	48	대한주짓수회
	49	대한민국줄넘기협회
	50	대한철인3종협회
	51	대한체조협회
	52	대한축구협회
	53	대한카누연맹
	54	대한컬링연맹
	55	대한탁구협회
	56	대한태권도협회
	57	대한택견회
	58	대한테니스협회
	59	대한파크골프협회
	60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
	61	대한펜싱협회
	62	대한하키협회
	63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64	대한핸드볼협회
준	65	대한서핑협회

	24	대한빙상경기연맹
	25	대한사격연맹
	26	대한사이클연맹
	27	대한산악연맹
	28	대한세팍타크로협회
	29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30	대한수상스키.웨이크스포츠협회
	31	대한수영연맹
	32	대한수중.핀수영협회
	33	대한스쿼시연맹
	34	대한스키협회
	35	대한승마협회
	36	대한씨름협회
	37	대한아이스하키협회
	38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39	대한양궁협회
	40	대한에어로빅힙합협회
	41	대한역도연맹
	42	대한요트협회

회원 (4)	66	대한요가회
	67	대한크라쉬연맹
	68	한국e스포츠협회
	69	대한무에타이협회
인정 단체 (14)	70	한국브리지협회
	71	대한오리엔티어링연맹
	72	대한민국줄다리기협회
	73	대한체스연맹
	74	대한치어리딩협회
	75	대한카바디협회
	76	대한테크볼협회
	77	대한특공무술중앙회
	78	대한파워보트연맹
	79	대한민국플라잉디스크연맹
	80	대한플로어볼협회
	81	대한피구연맹
	82	대한한궁협회
	-	-
	-	-

□ 대한장애인체육회 - 회원 시도체육회(17개)

No	단 체 명	No	단 체 명
1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10	강원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2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11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3	대구광역시장애인체육회	12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4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13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5	광주광역시장애인체육회	14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6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15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7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16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8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17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9	경기도장애인체육회	-	-

□ 대한장애인체육회 - 회원가맹단체(52개)

구 분	단 체 명		단 체 명	
정가맹(34)	1	대한장애인골볼협회	18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2	대한장애인골프협회	19	대한장애인양궁협회
	3	대한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	20	대한장애인역도연맹
	4	대한장애인농구협회	21	대한장애인요트연맹
	5	대한장애인당구협회	22	대한장애인 유도협회
	6	대한장애인댄스스포츠연맹	23	대한장애인육상연맹
	7	대한장애인럭비협회	24	대한장애인조정연맹
	8	대한장애인론볼연맹	25	대한장애인축구협회
	9	대한장애인배구협회	26	대한장애인컬링협회
	10	대한장애인배드민턴협회	27	대한장애인탁구협회
	11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28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12	대한장애인볼링협회	29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13	대한장애인사격연맹	30	대한장애인펜싱협회
	14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31	대한장애인카누협회
	15	대한장애인수영연맹	32	대한장애인트라이애슬론연맹
	16	대한장애인스키협회	33	한국농아인스포츠연맹(유형별)
	17	대한장애인승마협회	34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유형별)
준가맹(2)	1	대한장애인게이트볼연맹	2	대한장애인e스포츠연맹
인정(16)	1	대한장애인검도회	9	대한장애인파워싸커협회
	2	대한장애인궁도협회	10	대한장애인플라잉디스크협회
	3	대한장애인다트연맹	11	대한장애인한궁연맹
	4	대한장애인바둑협회	12	대한이식인체육연맹
	5	대한장애인야구소프트볼협회	13	대한장애인패러글라이딩협회
	6	대한장애인쇼다운협회	14	대한장애인낚시연맹
	7	대한장애인수상스키협회	15	대한장애인스포츠스태킹협회
	8	대한장애인술련협회	16	대한장애인가라테연맹